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점직·경업 금지 위반에 대한 관리 강화〉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74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검직·경업 금지 위반에 대한 관리 강화	2
IV.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미애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19.
3. 회 부 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및 제142조제3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겸직·경업 금지 위반에 대한 관리 강화

개정안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 또는 경업 현황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해당 임직원이 겸직 또는 경업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징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및 제142조).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조합장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 또는 경업(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② (생략)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현 행	개 정 안
1. 정관의 변경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u><신 설></u>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1. ~ 3. (현행과 같음) <u>4. 겸직 또는 경업 금지를 위반한 임 직원의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u> 5. (현행 제4호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직원 겸직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 례) 제5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전에 선임되거나 임용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조합등의 임직원과 대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겸직 또는 경업이 금지되며, 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하여 겸직·경업 금지 등을 포함하여 업무 전반을 지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필요한 처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겸직 금지 현황]

구분	임원	대의원
겸직 금지 (§52)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등의 감사를 겸직 불가 ○임원은 그 조합등의 직원을 겸 직 불가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 불가	○대의원은 해당 조합등의 임직 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 불가(조합장 제외)
경업 금지 (§42)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조합등의 임직원 및 대의원 불가	

그런데, 중앙회는 회원조합 임직원의 경업 현황 등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¹⁾, 중앙회가 회원조합 임직원 등의 겸직 또는 경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중앙회가 겸직 및 경업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회원 조합의 임직원 등의 이해충돌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현행법 제142조제3항제4호²⁾는 중앙회가 회원 조합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겸직 및 경업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 근거를 법률에 특별히 명시함으로써, 겸직 등의 위반을 방지하고 중앙회의 지도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1) 중앙회는 부실발생 또는 경영위험이 있는 조합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별표 2]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고려사항

□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 임원의 겸직금지

- 조합장과 이사 : 해당 조합 감사 겸직 불가
- 조합 임원 : 해당 조합 직원, 타 조합 임직원 겸직 불가

○ 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경업금지

- 조합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 경영·종사 금지

○ 조합장·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준수

- 이사회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거래 제한

* 제3자의 계산 : 제3자와 조합간 거래 중개·대리·위탁

다만, 개정안은 조합등이 임직원 등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경업은 그 자체로 금지되는 행위로서 경업 중에는 임직원 등이 될 수 없으므로, 경업 현황을 보고하는 것은 이미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끝난 이후의 사후적 통계관리에 불과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하면, 중앙회가 실질적으로 경업 위반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조합등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현황 일체”의 자료를 받은 후, 이를 겸직 금지 및 경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야 실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중앙회가 2025년말 기준 17만여명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경업 현황을 파악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각 조합장에게 정기적인 겸직·경업에 대한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중앙회는 그 현황을 보고받는 방안에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법제적인 측면에서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안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를 준용³⁾하여 임·직원의 겸직 또는 경업 현황을 농협중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11(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제2항·제4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 중 1인으로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도권한이 없음.⁴⁾

따라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는 겸직 등의 현황을 감독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 제161조(준용규정)⁵⁾는 중앙회가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안 제52조 제6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스스로에게 겸직 등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게 되므로, 동 조항은 인용하지 않도록 안 제161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142조제3항제4호는 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겸직 또는 경업 금지를 위반한 임직원의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⁶⁾에서 임

4)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회원)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5)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4항·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제3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9항·제10항,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6)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

원과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관적인 법 체계를 위하여 안 제142조제3항제4호도 임원과 직원에 대한 사항을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⁷⁾

문 의 처
02)6788-5417

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7)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